

의안번호	2217658
의 퇴 인	김형동의원
회 답 일	2026. 4.7.
추계번호	25B1607

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□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국립휴양공원위원회를 구성할 경우, 추가재정 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,600만원(연평균 520만원)으로 추계됨

-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: 2027~2031년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평균
국립휴양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(안 제36조의11)	5	5	5	5	5	26	5

주: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위원회의 위원 수, 회의 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6조의11(국립휴양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) 신설	제10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립휴양공원위원회를 둔(제1항)	의무규정
		제1항에 따른 국립휴양공원위원회의 구성·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각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(제2항)	
		공원관리청은 국립휴양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을 국립휴양공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2	안 제36조의14(국립휴양공원의 운영) 신설	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립휴양공원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민의 여가·휴양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함(제1항) 1. 국립휴양공원 조사 및 연구 2. 국립휴양공원 지식·정보의 보급 3. 국립휴양공원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4. 여가·휴양·치유 활동의 운영·지원 5. 국립휴양공원 자치협의기구의 운영·지원 6.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립휴양공원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의무규정
3	안 제36조의17(자연자원의 조사) 신설	공원관리청은 국립휴양공원의 자연 자원을 조사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특별한 조사 또는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할 수 있음(제2항)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관찰의 내용·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)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36조의11(국립휴양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) 신설	○	•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여 추계
2	안 제36조의14(국립휴양공원의 운영) 신설	×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개정안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립휴양공원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민의 여가·휴양 증진을 위하여 국립휴양공원 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추진할 경우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개정안은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합리적인 비용추계에는 한계가 있음

- 1) 제36조(자연자원의 조사)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자연자원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.
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특별한 조사 또는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.
 ③ 공원관리청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에 따른 자연공원의 자연자원 변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3	안 제36조의17(자연자원의 조사) 신설	×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개정안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국립휴양공원의 자연자원을 조사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해당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국립휴양공원의 규모 및 자연자원 조사의 방법, 참여 인원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시점에서 합리적인 추계에는 한계가 있음 - 참고로, 기후에너지환경부는 「자연공원법」 제36조¹⁾에 따라 국립공원공단 출연 사업으로 자연공원의 자연자원을 5년마다 조사하고 있으며,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26년 기준 35억원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국립휴양공원위원회의 설치(안 제36조의11)
- 개정안은 법 제10조²⁾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휴양공원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는 것으로,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- 본 추계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의견에 따라 유사사례인 ‘국립공원위원회’의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함

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 또는 관찰의 내용·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) 제10조(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) 각 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자연공원의 지정·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
2.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(국립공원위원회만 해당한다)
3. 공원계획의 결정·변경에 관한 사항
4.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자연공원의 보전·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

-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의견에 따르면,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는 현행 법 제9조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므로,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국립휴양공원위원회의 위원 수 및 회의 개최 횟수 등과 유사한 규모일 것으로 예상됨
- **(위원 수)** 개정안에 따른 국립휴양공원위원회의 위원은 현행법 제9조³⁾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의 사례를 준용하여 총 25명(정부위원 12명, 민간위원 13명)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함
 - 법 시행령 제5조⁴⁾에 따라 국립공원위원회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
- **(회의개최 횟수)** 회의개최 횟수는 유사사례인 국립공원위원회의 회의개최 횟수(2025년 기준 2회 개최)를 준용하여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
- **(회의참석 사례금)** 안건 검토비 등을 포함한 회의참석 사례금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20만원(참석수당 20만원⁵⁾)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
 - 이때,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- **(추계 결과)** 개정안에 따라 국립휴양공원위원회를 구성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,600만원(연평균 520만원)으로 추계됨

3) 제9조(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) ① 제10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립공원위원회를 두고, 도에 도립공원위원회를, 광역시에 광역시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두며, 군에 군립공원위원회를, 시에 시립공원위원회를, 자치구에 구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각 공원위원회의 구성·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광역시립공원위원회(이하 “도립공원위원회”라 한다) 및 군립공원위원회·시립공원위원회 또는 구립공원위원회(이하 “군립공원위원회”라 한다)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이 경우 각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.

③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(包括承繼人)을 해당 공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4) 제5조(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)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(이하 “국립공원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5)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,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200,000원내,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100,000원내에서 집행(기획예산처, 「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, 2026. 1. p.150.)

[표 3] 국립휴양공원위원회 구성에 따른 비용추계: 2027~2031년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평균
민간위원 수(A, 명)	13	13	13	13	13	—	—
회의개최 횟수(B, 회)	2	2	2	2	2	—	—
회의참석 사례금(C, 만원/명·회)	20	20	20	20	20	—	—
추가재정소요(D=A×B×C, 백만원)	5	5	5	5	5	26	5

주: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위원회의 위원 수, 회의 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 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V. 부대의견

-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위원회의 위원 수, 회의 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-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nabo.go.kr